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 1. 12. 시행) 취지를 고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한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제2호·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
 2. 제37조의2제2항,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 및 기준급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
 3.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5.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고,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의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제3호”로, “같은 영 제3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및 위원장을 지명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휴직한”을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4100원”을 “7만6000원”으로, “7만5800원”을 “7만77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하사의 경우 7호봉”을 “중위, 중사, 하사의 경우 6호봉”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815만2천원”을 “835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94만3천원”을 “916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94만3천원”을 “814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26만1천원”을 “949만3천원”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휴직한”을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제41조부터 제48조의2까지의 규정 및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94만3천 원”을 “916만7천 원”으로, “491만8천 원”을 “504만1천 원”으로, “894만3천 원”을 “916만7천 원”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 본문 및 별표 39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 및 별표 3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74조제4항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및 위원장을 지명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시·도지사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본다.”는 “제16조제3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로 한다.

제76조 중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교육감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는 “제16조제3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초임호봉란 나목2)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를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로 하고, 제1의2호의 초임호봉란 나목2)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를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호 및 제1의2호 비고란 중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는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의 초임호봉란 나목3)은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별

표 15 제2호 및 제3호의 비고란 중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는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 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 경력란의 가목 본문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경력란의 다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별표 17 제2호가목 경력란의 2)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복무 경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경력란의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별표 19 제2호가목 경력란의 2)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복무 경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경력란의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별표 22 제2호 경력란의 가목 본문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 경력란의 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9], [별표2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상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4호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4호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2일 전에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연봉제 전환 당시의 계급에 상

당하는 별표10과 별표4의 봉급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u> <u>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6</u> <u>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과 「공</u> <u>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u> <u>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u> <u>다.)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u> <u>사항을 심사하고, 제2호·제3호의</u> <u>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성과</u> <u>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u> <u>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u> <u>에 따른 특별승급</u> <u>2. 제37조의2제2항, 제67조제2항</u> <u>에 따른 연봉 및 기준급 책정</u> <u>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u> <u>3.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u> <u>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총액</u> <u>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u>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u> <u>의 지급</u> <u>5.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u> <u>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u> <u>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u> <u>고 정하는 사항</u>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확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고,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의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확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특별승급)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

-----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
호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3
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
령」 제3조의5-----
----- 「국가공무원
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제4호-----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의15-----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승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⑦ (생략)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 심의위원회의 심사-----
-----.

③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및 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

	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u>7만4100원</u> 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u>7만5800원</u> 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u>7만6000원</u> ----- ----- ----- ----- <u>7만7700원</u> ----- ----- -----.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u>하사의 경우 7호봉</u>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 ----- -----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② ----- -----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15만2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94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94만3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26만1천원

제37조의2(연봉 책정의 특례) (생략)
<신 설>

 -----.

 -----.

1. -----

 ----- 835만6천원 -----

 --

2. -----

 ----- 916만7천원 -----
 원

3. -----

814만1천원

4. -----

949만3천원

제37조의2(연봉 책정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무여건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u>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 규정」 제3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휴직한 경우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
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
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
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인
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
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감
액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
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
봉을 감액한다.

제61조(준용) ①·② (생략)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
여는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
진”은 “승격”으로 본다.

④ (생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
진 전 기본연봉에 894만3천원
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
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
에 491만8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
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
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
다)에 894만3천원을 각각 가산
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생략)

제61조(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1조부터 제48조의2
까지의 규정 및 제49조부터 제5
0조까지의 규정-----.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 916만7천원-----

----- 504만1천원-----

----- 916만7천원-----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생략)

<신 설>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그 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 본문 및 별표 39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을 적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 및 별표 3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위원회를 둔다.

⑤ (생략)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
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시·도지사별로”로, “소속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시·
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본다.

2. 3. (생략)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의 장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및 위원
장을 지명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

1. 제16조제3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2. 3. (현행과 같음)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u>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교육감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교육감이 지명하는”으로 본다.</u>	----- ----- ----- <u>제16조제3항의 “소속기관의 장”</u> <u>은 “교육감”으로 본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6